

'97 공영재산관리계획승인의견  
**검 討 報 告**

감도처 : 중부위원회 전문위원 이 양 진

1. 提出者: 瑞山市長

2. 提出日字: 1997. 5. 30

3. 提案理由

- 삼성종합화학(주) 단지내 위치한 도로로, 현재 시도로 활용중이며, 시설시공유 재산관리조례 제38조2호에 의거(보존 부지함 재산으로) 매수신청자인 삼성종합화학(주)에게 수의계약 매각허여 대체재산조성 예산화보와 시제상 화충에 기어

4. 主要骨子

- 치분재산내역

일련 번호	재 산 표 시			매각대상 수 량	추정가액 (천원)	매각시기
	소 재 지	지목	면 적			
1	대산읍 독곶리 411-10	도로	156, 146㎡	156, 146㎡	5, 387, 037	'97

매각사유	매수희망자	비 고
보존부지함 재산의매각	삼성종합화학(주) 유 현 식	공시지가

## 5. 檢討意見

- 본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4조 규정과 자산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견을 받도록 하는 자인으로써,
- 자산사 대신을 독곶리 411-10번지 삼성종합화학(주) 단지내 위치한 도로 156, 146㎡를 현재 삼성종합화학(주)가 사도로 원용함으로써, 자산사공유재산관리조례제38조 2호에 의거 보존부적합 재산으로 판단되어 삼성종합화학(주)에 수의 계약매각하이 대체재산을 조성하므로써 예산확보와 시제정 확충에 기여코자 하려는 것으로 승인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